



Grant Thornton

An instinct for growth™



베트남에 외국상인의 대표사무실의 설립

2016년 2월

2016년 01월 25일에 베트남 정부는 의령 No.07/2016/NĐ-CP(의령 07) 를 발금함으로서 대표사무실, 베트남에 외국상인의 지점에 대한 무역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의령 07은 2016/03/10일부터 발효되고 2006/07/05일에 의령 No.72/2006/NĐ-CP를 대체하고 무영 법의 구체적 규정을 하는 정부의 일부의령에 대한 행정절차의 변경, 보충된 의령 No.120/2011/NĐ-CP의 2011년 12월 16일 제2조를 삭제한다

이번 소식통으로, 우리 Grant Thornton Việt Nam은 귀손님들에게 다음 내용을 나눠고자 한다:

1. 베트남에 외국상인의 대표사무실 설립에 대한 규정.
2. (주)Grant Thornton Việt Nam의 일부 실천적 주의점 및 권고 사항들.

1. 베트남에 외국상인의 대표사무실 설립에 대한 규정.

a. 대표사무실 설립을 위해 외국상인들은 다음조건들을 만족해야한다:

- 베트남이 성원으로 되고 국제규약참가의 국가, 지역법규준수 아니면 그런 국가나 지역의 법인정에 의해 영업등록하거나 설립된 외국상인들의 경우.
- 외국상인은 설립하나 등록후에 최소 1년내 활동하고 대표사무실 설립의 허가신청날부터 최소 1년 활동효력이 있다.

b. 베트남에 외국상인의 대표사무실의 허가 기한:

- 05년 기한으로 외국상인의 영업등록증의 남은 기한을 초과하지 않지만 등록증에 기한규정이 있는 경우임.
- 기한 연기 가능하다.

c. 대표사무실의 활동 범위:

- 연락사무실의 기능으로 한다.
- 시장 조사진행.
- 자기가 대표하는 상인의 영업투자기회를 추진한다, 그러나 서비스 업종을 포함하지 않고 이런분야의 대표사무실의 설립은 연관 기관의 법규 문서들에 규정된다.

d. 대표사무실의 허가신청 서류들은 다음 포함:

- 상공부의 양식처럼 대표사무실의 설립허가 신청서;
- 외국상인의 영업 허가서;
- 대표사무실장 (최고 책임자)의 발령장;
- 감사된 재정보고이나 최근 재정년도에 외국상인의 존재와 활동을 증명해준 외국 세무조직의 확인서;
- 대표사무실장 사람의 여권;
- 장소임대에 대한 합의서혹은 확인서, 아니면 대표사무실의설치를 하고 장소를 사용하는 상인의 증면서류 사본.



2. 우리GRANT THORNTON VIỆT NAM9주0의 일부 실천적 권고사항.

a. 대표사무실의 활동 관련:

외국상인들은 자기영업활동에 대한 대표사무실의 활동을 자세히 검토해야 의령07엔 대표사무실의 활동을 축소했고 그에 따라 의령 72/2006/ND-CP중의“베트남 바트너와 계약건 이나 자기가 대표하는베트남시장에 관련을 검사, 독촉” 내용을 삭제했다.

b. 대표사무실장의 취임:

의령07엔 새로운 규정으로 대표사무실장은 대표사무실에 자기의 권한 과 의무를 집행하는 다른사람에게 베트남 출국할때에 위임 해주워야한다. 대표사무실장은 베트남에 30일 이상 결근하거나 사망, 실종, 구속, 투옥결정,민간행위 능력상실, 제한등을 할때에 다른 사람에게 위임해주 지않으면 외국상인은 다른사람을 대표사무실장으로 취임해야한다.

외국상인은 대표사무실장이 다음업무들을 겸용할수 없는 주의를 :

- 같은 외국상인의 지점 의 최고 책임자으로;
- 다른 외국상인의 지점; 최고책임자으로;
- 그 외국상인 아니면 다른 외국상인의 법정대표인으로;
- 베트남 법규에 의해 설립된 경제조직의 법정 대표인으로.

c. 대표사무실 장의 노동허가서, 개인소득세의무, 사회보험 및 사무실에 근무하는 베트남 직원들의 채용관련 :

- 대표사무실 장으로 취임된 사람이 베트남에 근무하기전에 노동허가서 발급신청을 해야한다.
- 대표사무실 장과 직원들이 베트남에 소득발생시 (대표사무실의 지급 유,무 의 무관) 개인소득세의무를 신고해 야하고 경우에 따라 대표사무실 장은 베트남에 2중과세 협정의 적용으로 신청할수 있다.
- 베트남직원을 사용하는 요구가 있을 때 대표사무실은 베트남사람 채용과 관리 실권조직에 직원 모집 제기 문서를 보내주고 그 중에 직원의 근무위치, 사람수, 기술전문 능력, 외국어능력, 근무 기한, 베트남직원들과 외국 조직, 개인의 근무기간중 및 퇴직할때에 그들의 권익과 의무를 반영한다.
 - 대표사무실의 제기문서를 접수후 15일내 베트남 근로자 채용, 관리 조직이 대표사무실에 베트남근로자들을 선택, 소개해준 책임이 있다.
 - 근무일 15일기한을 지나서도 베트남 근로자채용, 관리조직이 대표사무실의 채용요구에 대한 사람선택, 소개해주지 않으면 대표사무실은 베트남 근로자를 직접 모집채용될수 있다.

- 근무 계약서체결후 7일내에 대표사무실은 베트남 근로자 채용, 관리조직에 통보문과 근로자와 근무 계약서 사본을 같이 보내준다.
- 대표사무실과 근무계약하는 외국인, 베트남직원들은 필수 보험가입을 해야한다.

고객님은 베트남에 대표사무실 설립 검토중이나 대표사무실의 활동에 관련된 법규준수 상황 검고를 하시려면 우리 Grant Thornton Việt Nam (주)와 연락해주셔서 협조를 받을수가 있다.





본 소식통의 정보들은 효력이있는 법규 각종 문서부터 요약 하거나 종합한다. 우리 GT Vietnam(주)의 능력과 노력 으로 상기의 소식 통 내용들이 관련 회사 들에 유익적 참고목적으로만 생각한다.

(주) Grant Thornton (VietNam)은 본 소식통 의 잘못점에 대 한 책임 그리고 이용하는 과 정에 손해 를 입는데 책임 지지 않다.

고객님은 우리의 업데이트 소식을 Download 하시려면 다음 Web에 검색해주신것을 바란다.

www.grantthornton.com.vn



Văn phòng Hà Nội- 하노이 사무실

Tầng 18, Tòa tháp Quốc tế Hòa Bình
106 Hoàng Quốc Việt
Quận Cầu Giấy, Hà Nội
Việt Nam
ĐT + 84 4 3850 1686
F + 84 4 3850 1688

Hoàng Khôi

Partner Tư vấn thuế
ĐT +84 4 3850 1618
E Khoi.Hoang@vn.gt.com

Nguyễn Đình Du

Partner Tư vấn thuế
ĐT +84 4 3850 1620
E Du.Nguyen@vn.gt.com

Phạm Vinh

한국고객님 지원자
ĐT +84 913 02 4204
E 50vinhphamngoc@gmail.com

Kaoru Okata

Giám đốc - Khách hàng Nhật Bản
ĐT +84 4 3850 1680
E Kaoru.Okata@vn.gt.com

Phạm Ngọc Long

Giám đốc Tư vấn Thuế
ĐT +84 4 3850 1684
E Long.Pham@vn.gt.com

Văn phòng Hồ Chí Minh- 호지민 사무실

Tầng 14, Tòa nhà Pearl Plaza
561A đường Điện Biên Phủ
Quận Bình Thạnh, Tp. Hồ Chí Minh
Việt Nam
ĐT + 84 8 3910 9100
F + 84 8 3914 9101

Nguyễn Hùng Du

Partner Tư vấn thuế
ĐT +84 8 3910 9231
E HungDu.Nguyen@vn.gt.com

Valerie – Teo Liang Tuan

Giám đốc Tư vấn Thuế
ĐT +84 8 3910 9235
E Valerie.Teo@vn.gt.com

Trần Hồng Mỹ

Giám đốc Tư vấn Thuế
ĐT +84 8 3910 9275
E HMy.Tran@vn.gt.com

Tomohiro Norioka

Giám đốc - Khách hàng Nhật Bản
ĐT +84 8 3910 9205
E Tomohiro.Norioka@vn.gt.com

Trần Nguyễn Mộng Vân

Giám đốc Tư vấn Thuế
ĐT +84 8 3910 9233
E MongVan.Tran@vn.gt.com